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2026년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 원)

방문당 시간	총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30분	17,450	2,618	1,571	1,047
60분	25,320	3,798	2,279	1,519
90분	34,120	5,118	3,071	2,047
120분	43,430	6,515	3,909	2,606
150분	50,640	7,596	4,558	3,038
180분	57,020	8,553	5,132	3,421
210분	63,530	9,530	5,718	3,812
240분	70,080	10,512	6,307	4,205

○ 방문간호 급여비용(수가: 원)

방문당	총급여비용	본인부(15%)	감경(9%)	감경(6%)
15분이상~30분미만	42,880	6,432	3,859	2,573
30분이상~60분미만	53,770	8,066	4,839	3,226
60분이상	64,690	9,704	5,822	3,881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 수급권자	0%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6%
40% 감경대상자	9%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